

자동차보험의 유형별 보상사례

– 손해배상금의 산정 방법 –

김 희 중

〈한국자동차보험(주) 지점장〉

1.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 (보험금 지급 기준)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치료비, 장례비용, 사고 기간중 직장 근무를 하지 못하여 받지 못한 급여의 손실 등은 그 산정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위자료의 경우만 해도, 어떤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정할 것인지, 부양가족이 많은 집의 가장이나, 부양가족이 없는 어린이의 경우에 차등을 둘 것인지 등 산정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특히, 후유장해나 사망의 경우 장래의 수입 상실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며, 향후의 가정적인 조건에 기초한 산정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손해 배상의 적정한 산정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특히, 재판실무에서)의 결과로 상당 부분 정형화된 원칙이 확립되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보다 합리적인 산정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는 종래의 확립된 손해 배상 산정 방식을 원용하면서, 피해자가 손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증명없이 일정액을 인정한다든지, 많은 피해자의 손해 배상을

신속하게 산정할 필요성이라든지 (재판의 경우에는 한 건의 손해 배상 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기는 하지만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의 구조적인 불균형 등 자동차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손해 배상 산정 기준(이를 “보험금 지급 기준”이라 한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2. 장래의 수입 상실 손해

진단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 치료비나 장례 비용, 정액화되어 있는 위자료의 산정에 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손해배상금 중에서 금액상으로 비중이 크고, 산정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이론적,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 장래의 수입 상실 손해(이를 “상실수익” 또는 “일실 이익”이라 한다)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상실 수익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와 사망의 경우에 발생되는 손해이나, 사망의 경우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사망이 노동력을 100% 상실한데 대하여, 후유장해는 그 정도에 따라 1%~100%까지 노동력의 상

실률이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는 점이 사망과는 다르며, 또한 사망의 경우는 후유장해와는 달리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지 않아 생활비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생활비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산정 원리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가. 산정공식

(월평균 수입액 – 생활비) × 취업 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 낮쓰 계수

나. 월평균 수입액

사고 발생 직전 3개월 또는 1년 동안에 피해자가 얻고 있었던 수입을 월평균한 금액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수입 금액을 인정하는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1) 근로의 대가로 얻은 수입이라야 한다. 따라서, 임대료·이자·배당금 등 자산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수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는 그 증명 방법으로서 납세자료를 필요로 한다.

(3) 수입이 장래 계속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무면허 중기조종사가 월급여를 받고 실제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 소득은 수입으로 인정될 수 없다.

(4) 사고 당시 현실적인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면 수입이 생길 것을 가정하여 통계 소득을 인정하며, 가정주부도 통계 소득을 인정한다.

다. 생활비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얻고 있던 수입중에서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쓰게 마련이므로, 상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은 그 생활비 해당액은 공제하게 되나 피해자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는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독신인 경우에는 수입의 50%, 부양가족이 1인인 경우에는 40%, 2인은 35%, 3인 이상은 30%로 정하고 있다.

라. 취업 가능 일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쓰 계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향후 얼마나 취업할 수 있는지를 월수로 환산한 것을 취업 가능 월수라고 한다. 법령이나, 취업 규칙 등에 정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인정하고, 무직자나 유아, 가정주부처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5세로 인정한다.

라이프니쓰 계수는 기술적인 계산 방식에 불과하다. 이 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향후 매월 얻게 될 수입을,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한꺼번에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받게 될 금액은 이자(연 5%)를 공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계산을 미리 해 둔 수치가 라이프니쓰계수이다.

위자료의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정할 것인지, 부양가족이 많은 집의 가장이나 부양가족이 없는 어린이의 경우 차등을 둘 것인지 산정방법이 간단하지는 않다.

〈사례 1.〉

선행하던 차량이 횡단 보도상의 보행자 신호를 보고 급정차하자, 뒤따라 오던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20세 되는 남자(무직자로서 미혼)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 상상실 수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가.

$$\text{산정 방식} = 557,500\text{원} \times (100 - 50 = 50\%) \text{ 즉, } 0.5 \times 164.7766 = 45,931,477\text{원}$$

이 피해자는 무직자이므로 월평균 수입액은 통계 소득(정부 노임 단가)을 적용하게 된다.(1994년도 정부 노임 단가는 남자가 월 557,500원이다). 또한, 독신이므로 생활비는 50%를 공제하고, 향후 55세까지 취업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균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384개월(32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쓰 계수는 164.7766이므로, 위와 같이 산정된다.

〈사례 2.〉

사고 직전에 신규 취업하거나, 또는 사고 직전에 회사의 봉급이 일률적으로 인상된 경우와 같이, 피해자 자신은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인상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월수입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인정하는가.

상실 수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다른 신입 동료 직원들이 급여를 받거나, 인상된 급여를 받는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에는 신규 취업자의 경우는 피해자가 받기로 예정된 초임급여를,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사례 3.〉

건설 현장에서 일당 50,000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취업을 하고 있던 보일러공(기술적 근로자)의 경우, 간이 급여 대장은 있으나, 납세 자료가 없다면 그 소득은 어떻게 인정하는가,

납세 자료가 없으므로, 일당 50,000 원(월 1,250,000 원 = 50,000 × 25 일)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보일러공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므로, 통계소득인 정부 노임단가 보일러공 임금인 월 867,500 원을 인정할 수 있다.

〈사례 4.〉

사고 당시 만 58세인 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실 수익이 인정되는가.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취업 가능 연령에 관하여, 법령이나 취업 규칙 등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5세 까지를 한도로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이미 55세를 넘어서 경 우에는 향후 일정 기간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향후 4년 즉, 48개월(라이프니쓰계수 43.4229)의 취업 가능 월수가 인정된다. ◎